

●국무총리훈령 제848호

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(를)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06월 01일

국 무 총 리 인

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관련 추진계획 수립
2. 특별행정심판의 실태조사 및 행정심판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·분석
3.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에 필요한 법·제도 개선
4.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법·제도 개선
5. 「행정심판법」 등 행정심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국회,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
6.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
7. 그 밖에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3조(구성) ① 기획단은 단장 1명, 통합기획팀장·통합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기획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
③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단의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공무원의 파견) ①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
제6조(자문단) ①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관계 전문가

로 구성된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 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기획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존속기한) 기획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1년간 존속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이 권익 구제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과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